

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(2개 품목) 보조지원 지침

1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리프트(교체)

◆ 최근 5년간 리프트 사망사고가 낙하방지장치 미설치 또는 안전검사 비대상 기계에서 지속 발생*되어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(㉠적재하중 0.5톤 이상 → ㉡전체)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필요성 대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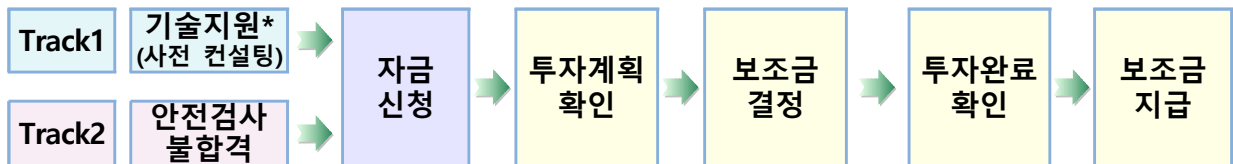
* 최근 5년간('18~'22) 리프트 사고사망자 35명 중 안전검사 비대상에서 약 54.3%(19명) 발생
↳ 낙하방지장치(추락 시 동작 멈춤) 미설치로 약 39.5%(15명) 발생(안전검사 비대상 포함)

○ (지원대상)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(건설업 제외)

※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'소기업 규모 기준'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

* 지원제외대상: ①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②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③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현장(400**)인 경우, ④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, ⑤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⑥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 등

○ (지원절차)



*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,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, 점검 또는 기술지원(사전 컨설팅 등)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(교체가 필요한 경우)을 받은 리프트에 한함

○ (지원품목) 안전검사 대상* 산업용 리프트(교체)

* 고용노동부고시 [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]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설비

- ① 지원대상설비 확인을 위한 기술지원결과서(공단 등 컨설팅확인서) 또는 ②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내용 상 주요구조부 불량 등의 사유로 전체교체를 요구하는 리프트

- 산업용 리프트 전체교체 설치에 한하여 지원하여,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안전인증서 제출(미제출 시 결정 취소)

※ (부분개선) 방호울, 운반구문, 건물측 출입문, 과부하방지장치 등 주요 방호장치, 기타 안전조치 등
↳ 기존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지원품목(리프트·승강기 안전장치)으로 지원 중

○ (지급기준)

연번	대상 품목명	대상 설비명	보조금지급기준
1	산업용 리프트	산업용 리프트 (교체)	1.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8호[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] 별표1에 따른 안점검사 대상 리프트 - ①지원대상설비 확인을 위한 기술지원결과서(공단 등 컨설팅확인서) 또는 ②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내용 상 주요구조부 불량 등의 사유로 전체교체를 요구하는 리프트 2. 고용노동부 고시[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] 별표2[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름 3. 고용노동부 고시[안전검사 고시] 별표3에 따른 산업용리프트 (랙 및 피니언·유압식)에 한하여 지원가능 4. 투자완료 확인 전 안전인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 5. 「원가계산(검토)보고서」에 따라 가격 결정

○ (가격기준)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

○ (지원금액)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,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% 지원

* 부가세는 지원 불가.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

○ (사후관리)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3년 적용

○ (투자완료 시 추가 징구서류)

- ①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서, ②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· 세금계산서

2 K-사다리

- ◆ 최근 5년('18~'22년)간 사다리 작업 중 사고사망자 176명 발생, '22년 기준 추락 사고사망자 322명의 기인물 중 사다리가 32명(10%) 점유하여, 사다리 작업 중 추락예방을 위해 신규 개발된 "K-사다리"를 재정지원에 연계

○ (지원대상)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(건설현장 제외)

※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'소기업 규모 기준'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

* 지원제외대상: ①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②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③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현장(400**)인 경우, ④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, ⑤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⑥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 등

- 건설업의 경우,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*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본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(건설현장 제외)

<건설업 등록증 인정 범위>

-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의 종합건설업(5종) 및 전문건설업(29종) 등록증
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,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,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,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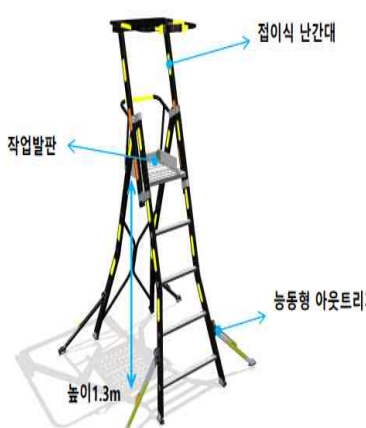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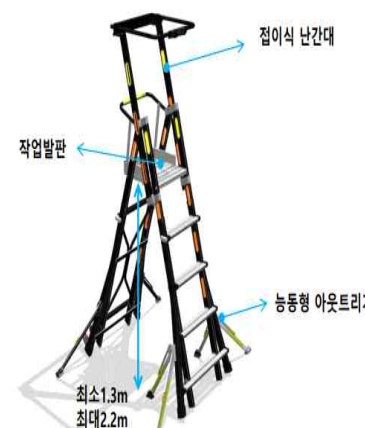
○ (지원품목) K-사다리*[첨부1 참조]

* 공단과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한 제품으로, S마크 안전인증을 득한 설비

○ (지급기준)

연번	대상 품목명	대상 설비명	보조금지급기준
2	K-사다리	K-사다리	1. S마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원 2. 공단과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한 제작사의 제품에 한함 3. 전도 방지를 위한 능동형 아웃트리거 필수 설치 4. ①회전형 안전난간, ②승하강 손잡이 홀, ③접이식 작업발판, ④버팀면과 오름면 구분 구조를 갖추어야 함 5. 제품별 작업높이는 높이 고정형 1.3m, 높이 조절형 1.3~2.2m로 제한 6. 건설업 본사는 현장 반출입대장 작성(책임관리) 7. 「표준가격테이블」에 따라 가격 결정

○ (가격기준) 「표준가격테이블」에 따라 가격 결정

구분	높이 고정형	높이 조절형
사진		

○ (지원금액)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,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% 지원

* 부가세는 지원 불가.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

○ (사후관리)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3년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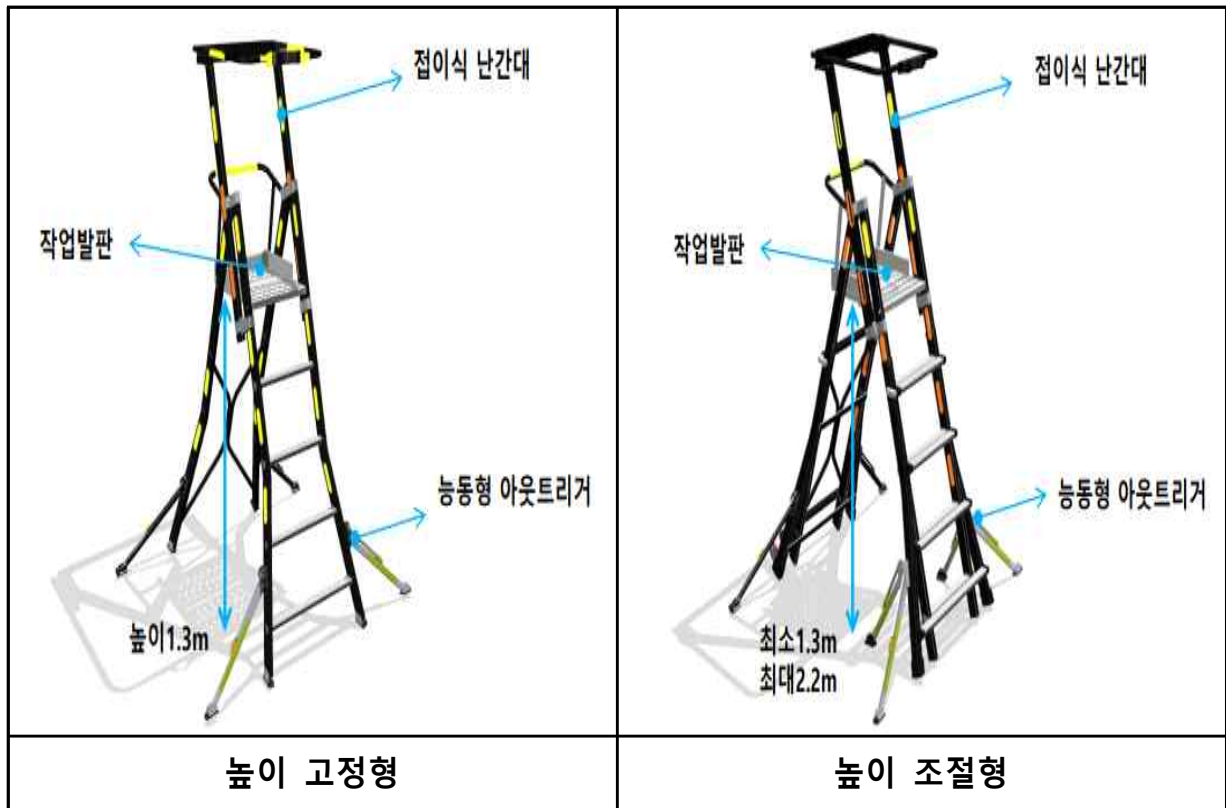
○ K-사다리 개발 내용

- (높이 고정형) 단일 높이에 맞추어 경량성을 극대화한 제품

▶ 높이 : 1.3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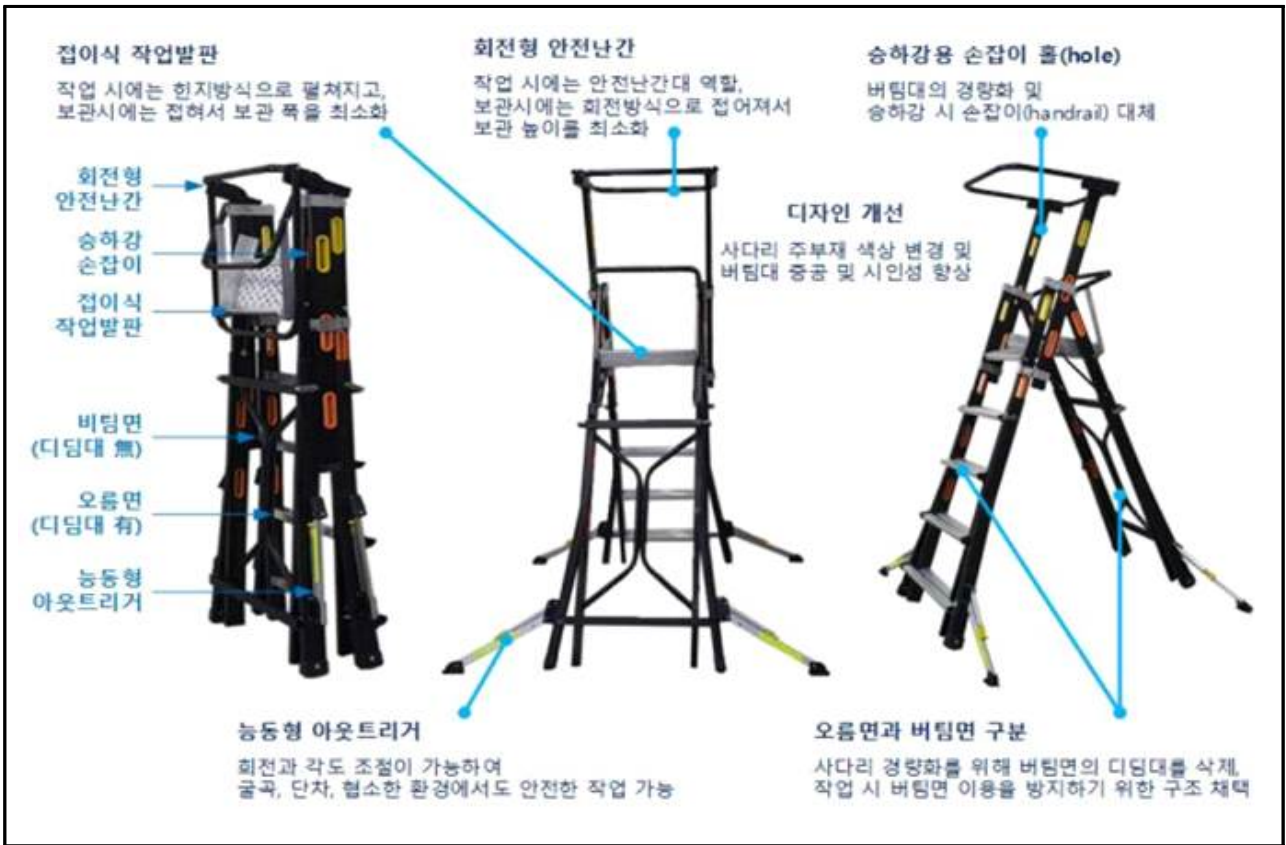
- (높이 조절형)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적용성 향상 제품

▶ 높이 : 1.3~2.2m



구 분	특징 및 장점
경량성	• 고정형 제품은 기존 A형 사다리와 유사한 무게이나, 조절형 제품은 기존 사다리형 작업대 제품 대비 10-35% 감량
운반성	• A형 사다리처럼 간편하게 접어서 엘리베이터 또는 1톤 트럭 등으로 자유롭게 운반 가능 ※ 상부에는 어깨에 매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어깨보호대, 하부에는 운반용 바퀴 부착
안전성	• 주요 사고형태인 추락·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 ※ 추락예방을 위한 플랫폼 탑재 및 사다리 전도예방을 위한 능동형 아웃트리거 설치

○ K-사다리 특징 및 주요구조



○ K-사다리 설치 사례

